

(4) 사안의 해결

B 등은 사전반대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2013. 11. 25. 합병승인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乙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乙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방법

(1) 자기주식취득의 유형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취득하면 무효가 된다. 하지만 ㉠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제341조 제1항 본문)과, ㉡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제341조의2)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제341조의2 제4호).

(2)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1) 원칙 - 의무 소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제341조의4 제1항). 소각의 결정은 이사회결의로 한다(제343조 제1항 단서).

2) 예외 - 보유·처분

① 보유·처분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제341조의4 제2항).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주식교환·이전이나 합병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② 절차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41조의4 제2항). 주주총회의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동조 제3항).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3) 사안의 해결

乙회사는 B 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유·처분할 수 있다.

해설

1. 쟁점의 정리

甲회사의 A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함)이 자기거래로서 유효한지 문제된다. 특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회사'라 함)에서 자기거래 승인가관이 어떻게 되는지와 다수 주주의 동의에 의해 자기거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대치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¹⁾

2. 자기거래

(1) 자기거래의 의의

1) 자기거래의 개념

자기거래란 이사, 주요주주 및 그 소정의 특수관계인(이하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로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를 말한다.

2) 자본거래

자본거래도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으면 자기거래가 될 수 있다. 즉 이사 등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회사가 처분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자기거래의 적법요건

1)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① 이사회회의 승인결의

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회의 승인은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승인 결의는 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자기거래의 당사자는 승인 결의 이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제398조).

② 소규모회사의 특칙

A. 내 용

소규모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자기거래 승인을 주주총회결의로 한다(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1) 2026. 3. 6.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甲회사가 자기주식을 A에게 처분하려면 이사 전원에 의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위 상법 개정 전의 것이다. 개정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요건·절차는 염두에 두지 않고 출제된 것이므로 위 요건·절차 충족 여부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